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기장을 헌신영예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상이기장령」(대통령령 제 호, 2023. 3. . 공포,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2. 6. 27. ~ 8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

상이기장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헌신영예기장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) 「헌신영예기장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「군인사법」 제2조 각 호의 사람, 경찰관,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·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.

1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3·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·중양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
2. 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
3.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

제3조(추천 등)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추천 하려는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 관련 기관·단체 의 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에 영 제2조 각 호 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 신청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 관련 기관·단체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추천 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 , e-mail :)		
	부상 당시 소속(직업)		부상 당시 직책
	현재 소속(직업)		현재 직책
	추천	부상이 발생한 날	
	내용	부상 상황	
		부상 원인	
		부상 장소	

「헌신영예기장령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 수여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추천기관의 장

직인

국방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「헌신영예기장령」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추천서 작성



제출 및 접수



확인



수여

추천기관

추천기관
→ 국방부

국방부

국방부

헌신영예기장 추천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추천 신청자	성명	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 : , e-mail :)		
	부상 당시 소속(직업)		부상 당시 직책
	현재 소속(직업)		현재 직책
	추천	부상이 발생한 날	
	신청	부상 상황	
	내용	부상 원인	
	부상 장소		

「헌신영예기장령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추천기관의 장 귀하

제출서류	「헌신영예기장령」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